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9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1.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9호)	1
2.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2호)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9호)	1
2.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2호)	2
III . 검토의견	4
1.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4

I. 제안경위

1.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9호)

가.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2.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2호)

가.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22.

다.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9호)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 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2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

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신설)

현 행	박정현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신 설>	○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 신설	○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박정현 의원안의 경우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1948호)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³⁾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의원안의 경우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2111호)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과 양여에 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의미함⁴⁾.

3) ‘중앙회등’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를 포괄함.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율방범대 현황]

구분	조직	인원(명)
2019년	4,230	102,510
2020년	4,221	100,693
2021년	4,223	100,443
2022년	4,194	99,394
2023년	4,442	87,560
2024년 6월	4,498	90,824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및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이들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는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사무 공간을 개선하고 자발적 방법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치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부여의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자율방범대 사무실 현황]

사무공간 미보유	사무공간 보유			
	계	컨테이너	민간건물	공공건물
541(12.1%)	3,957(87.9%)	3,016	495	446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

가 활동 공간을 임차한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⁶⁾.

셋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48호 및 제2202111호)은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을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⁷⁾하고 있는 바, 특례 요건과 대상의 명확성 및 구체성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박정현 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있으며 이만희 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⁸⁾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291억원의 예산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자료 제작에 4.05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8)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한편 이만희 의원안은 특례유형으로 ‘사용료등의 감면’ 뿐만 아니라 ‘양여’도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여’를 특례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48호 및 제2202111호)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함.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율방범대는 민간자율조직이므로 특례 규모 및 특례 예상 대상 장소에 대학 파악이 어렵고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유사한 성격의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자율방범대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이 가능하나 제한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가능하게 한 입법취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의원안_의안번호 제2201948호)

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사용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안_의안번호 제2202111호)

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공유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사용·양여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박정현의원안			
별표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이 만 회 의 원 안			
	별표			
< 신 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0. 12. 31.

문 의 처

02)6788-5150